

2021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II

1. 근속 5년 도래시 안식년휴가가 부여됩니다

- 휴가일수 : 안식년 휴가 5일 + 개인 연차휴가 5일(연속사용 필수)
- 사용시기 : 근속 5년 도래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및 사용 ※ 미사용시, 안식년휴가 청구권 소멸

2.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의 육아지원을 위해 반차휴가 횟수가 확대됩니다

- 대상 :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또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
- 연간 최대 사용 횟수 : (기존) 14회 → (개선) 20회

3. 부서장 재량의 포상휴가가 신설됩니다

- 부여사유 : 부서장 재량으로 직원 사기진작 필요 시
- 부여일수 : 직원 1인당 연간 최대 7일 이내
- ※ 부서장 : 팀장, 부장, 담당, 지점장, 지사장, 센터장 등 복무를 관리하는 직책자

4. 개념이 유사하고 다양한 유연근로제가 통합됩니다

- 통합 대상 제도 : (구)선택근로제, Core-time근로제, 가족사랑유연근무제
- 통합 선택근로제 주요 내용

대상	근로 형태	일 근로시간	근로 시간대	재택근무	신청 단위
전 직원	주단위 소정근로시간 내 자율	최소 4시간	06시~20시	○ (08시~19시)	주

✓ 기존 필수근무시간제(11시~15시) 폐지

※ 재량근로, 간주근로, 탄력근로 등 기타 유연근로제는 기존 제도 유지